

결 정

2018 - 2042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
1.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
2.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

주 문

朝鮮日報 2018년 2월 27일자 A24면 「일본소비자들에게 “기적의 올인원 비누”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씨엘바이오 올인원 크림바/세상에 이런일이...비누로 씻기만 했을뿐인데...」 제목의 광고, 스포츠서울 2월 28일자 7면 「일본소비자들에게 “기적의 올인원 비누”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씨엘바이오 올인원 크림바/세상에 이런일이...비누로 씻기만 했을뿐인데...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朝鮮日報, 스포츠서울의 적시광고는 피부에 좋고, 아토피, 탈모 예방까지 한다는 비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.

특히 이 비누는 핵심원료 CL균사체 배양물과 99% 천연유래성분들로만 제조돼 피부보습, 미백, 주름은 물론 아토피, 무좀, 탈모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
광고는 비누가 의약품도 아니고 의약외품도 아닌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 「약사법」 61조를 어겼다. 이 조항은 ‘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·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·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‘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

있고,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3,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2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송 호	정송호
	장 명 국	장명국
	박 재 현	박재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	하 윤 수	하윤수
	김 영 모	김영모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2) 광고주의 명칭,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